

공사계획 [] 신고서 [] 변경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공사명

신고인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
	회사명 또는 상호	
	주소	

「전기사업법」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 [] 신고 [] 변경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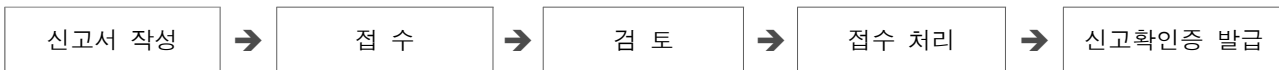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시·도지사

귀하

첨부서류	1. 공사계획서 1부 2.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. 공사공정표 1부 4. 기술시방서 1부 5.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.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7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(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. 다만,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.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
------	--

처리절차



신고인

처리기관: 산업통상자원부, 시·도

첨부요령

-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공사계획을 나누어 인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설비로서 저압으로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.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